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24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 ①~④(생략) ⑤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.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4조의 2(수익증권의 전환) ①~④(현행과 같음) <삭제></p>
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·②(생략)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 ④(생략)</p>	<p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 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2조(환매수수료)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환매수수료는 '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'을 기준</p>	<p>제42조(환매수수료) 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

<p>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<u>A클래스, Ae클래스, C1클래스, C2클래스, C3클래스, C4클래스, Ce클래스, I클래스, W클래스, S클래스</u></p> <p>가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2. <u>Cp클래스, Cp-E클래스, Cp2클래스, Cp2-F클래스, S-P클래스</u> : 환매수수료 없음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 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
<p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(생략)</p> <p>⑤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	<p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 <p>①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~③(생략)</p> <p>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⑤·⑥(생략)</p>	<p>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 <p>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④·⑤(항변 변경)</p>
<p><신설></p>	<p>부칙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